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제 실시점검과 효과

‘시장’이 사라진다

김 신 석유가스신문사 편집국장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나 개선 방안이 없을 때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동원하는 수단이 ‘극약처방(劇藥處方)’이다.

극약처방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도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면서 까지 정부와 국회는 유사석유 사용자 까지 처벌하는 칼을 꺼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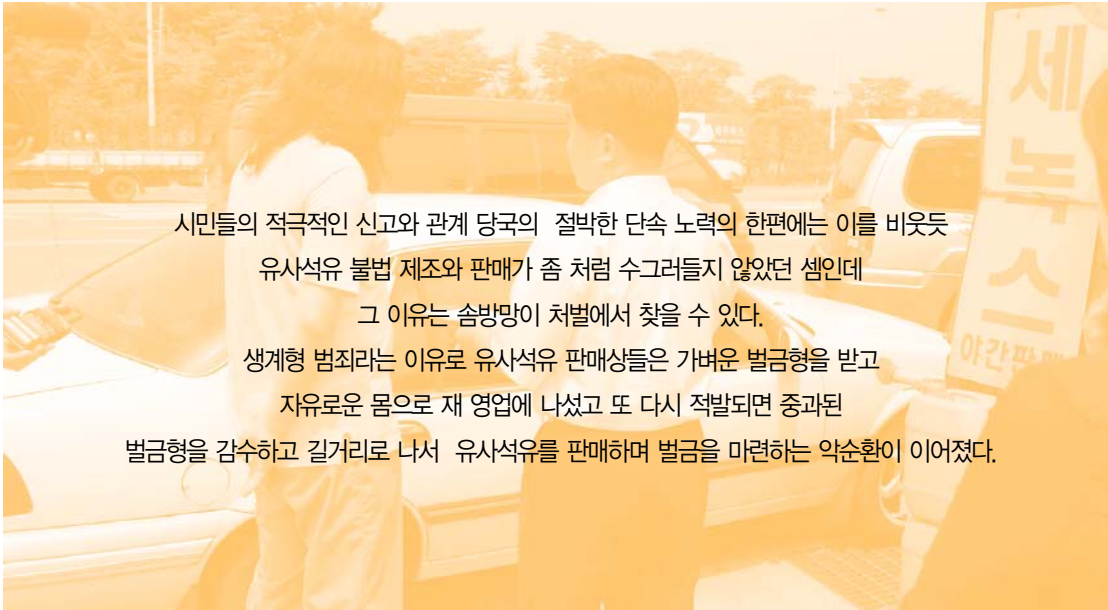
극약처방의 결과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명적인 위협은 비껴 가면서도 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지난 7월 28일 이후 길거리 불법 판매상 들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유사석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 동안 동원한 다양한 수단과 오랜 인내의 결과물보다 유사석유 사용자를 처벌해 수요를 틀어 막는 효과가 훨씬 탁월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간 유사석유 근절에 동원됐던 수단들은 다양했다. 세눅스로 대표되는 첨가제형 유사석유의 연료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연료와 혼합될 수 있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했고 첨가제 등록과정에서도 사전 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계 당국의 절박한 단속 노력의 한편에는 이를 비웃듯 유사석유 불법 제조와 판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던 셈인데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유사석유 판매상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자유로운 몸으로 재 영업에 나섰다 또 다시 적발되면 증가된 벌금형을 감수하고 길거리로 나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며 벌금을 마련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해 유사석유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해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시설을 폐쇄, 철거하고 관련 시설을 봉인 조치해 재 영업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도 도입했다. 유사석유 원료가 되는 용제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추적 단속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로 산자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총 76개 용제판매업소를 추적 조사했고 이중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를 용제로 불법 공급한 14개 업소를 적발해 130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9월 이후 유사석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고 상시 체제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제도로 불법을 막는 것은 한계가 뚜렷했다. 오히려 해가 다르게 유사석유 불법 유통은 늘어나는 추세다.

첨가제형 유사석유의 대표적인 세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03년 한해 동안 총 1426건의 유사석유 제조·판매상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8332건까지 치솟았다. 버스나 운전면허 학원, 대형 건설현장 같은 석유 자가 소비처에서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형 자가소비처에서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4년 38건에서 지난해에는 8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계 당국의 절박한 단속 노력의 한편에는 이를 비롯듯 유사석유 불법 제조와 판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던 셈인데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유사석유 판매상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자유로운 몸으로 재 영업에 나섰다 또 다시 적발되면 중과된 벌금형을 감수하고 길거리로 나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며 벌금을 마련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유사석유 제조상들은 더욱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 갔다. 심지어 대형 화물차를 이동하면서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공급할 정도로 지능화됐다.

〈표1〉 길거리 유사석유 적발실적

(단위:업소/건)

년도	합계	유사석유 취급자			대형사용처	기타
		소계	제조장	판매소		
2003년	1,113/1,426	1,113/1,426	50/183	1,063/1,243	-	-
2004년	2,728/3,836	2,711/3,798	242/502	2,469/3,296	17/38	-
2005년	5,081/6,622	5,020/6,515	163/408	4,857/6,107	25/44	36/63
2006년	6,313/8,506	6,217/8,332	114/474	6,103/7,858	44/83	51/91



이동차량내 유사석유 제조장치(좌측부터)와 유사석유 주유장면, 유사석유 압류 현장 모습.

유사석유 제조단계 차단 효과 제한적

강력한 단속으로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상들을 근절시켜 시장에 불법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석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 공급 폭지를 제도로 완벽하게 틀어 막지 못하는 한계와 값싼 유사석유를 찾는 시장의 풍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지경까지 내몰렸고 결국 정부는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라는 극약처방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됐다.

불법 제품 사용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약 같은 향정신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받는다. 불법 프로그램 복제품을 취득하고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위조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

산자부가 지난 2004년에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을 석유사업법에 도입한 것은 마약이나 위조 화폐처럼 유사석유 불법 유통의 사회적 폐해가 컸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셈이다. 하지만 당시의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산자부는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판매목적 인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고 저장·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석유사업법에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었는데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였다.

그런 면에서 올해 7월 시행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은 과잉처벌의 논란을 피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에 한정해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등에서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감추고 판매한 석유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의사로 유사석유를 구매한 사용자들을 솥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사용자 위축으로 유사석유 수요 크게 줄어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산자부는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지난 7월 28일 이후 한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06명의 유사석유 사용자가 적발됐고 각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수년에 걸쳐 유사석유 제조·판매상을 단속했던 것에 비해 이번 사용자 단속의 효과가 괄목할 만하다는 점이다.

2003년 이후 강도 높은 유사석유 제조·판매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유통상들은 확연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에 걸친 유사석유 사용자 단속의 결과로 106명을 적발하는 과정의 효과는 위력적이었다.

수많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던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상 상당수가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간의 유사석유 특별 단속에서 산자부는 거점이 확보된 총 1578개 판매상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실제 적발된 업소는 374곳에 불과했다. 단속 대상중 76.3%에 해당되는 유사석유 판매상들은 아예 영업을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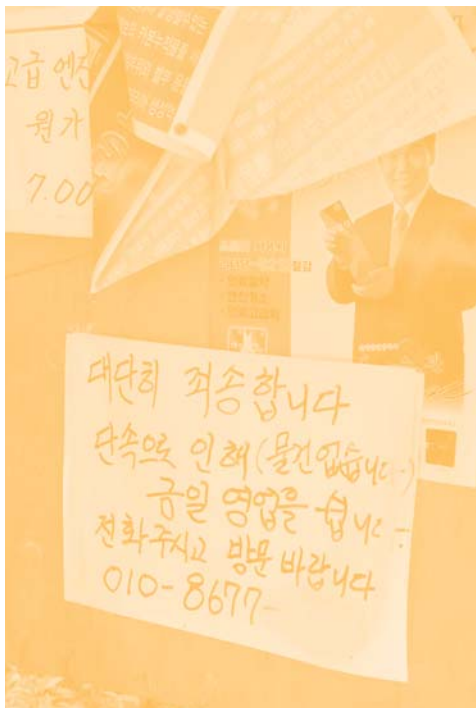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판매가 가장 극심했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총 36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18%에 불과한 66개 업소에서만 영업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지역 역시 244곳을 단속했고 이중 22%에 해당되는 54곳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유사석유 판매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는 '시장 수요'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사석유 사용자가 단속 타깃에 포함되면서 구매를 꺼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사라지면서 공급 단계가 위축되는 시장 논리가 고스란히 작용되고 있는 셈이다.

음성적 유통 차단이 남은 과제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유사석유 유통이 더욱 지능화·음성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와 구매 현상이 노출되는 길거리형 유통방식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어려운 주문·배달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한달여 간의 유사석유 사용자 단속현장을 부분적으로 동행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을 닫은 판매상들이 배달 판매를 안내하는 홍보문을 내건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 불법 배달 판매가 성행하게 될 경우 일정한 거처가 확보된 길거리형 판매상에 비해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단속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자칫 유사석유 유통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만큼 탄력적인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하는데 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방안 중 하나다. 유사석유 판매 현장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원이 제한적인 경찰력을 대신해 산자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사석유 원료가 되는 용제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석유의 제조와 유통, 구매의 모든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갑원의원이 교통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용제 조건부 면세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재정부의 반대로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용제조건부면세방안은 유사석유 원료가 되는 용제에 석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 불법 전용의 고리를 차단하되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교통세 등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페인트 희석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고 조건부 면세 과정의 행정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세법에서는 휘발유나 경유 대체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용제 역시 정상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연료 전용의 경우에 대응해 과세하자는 취지인 만큼 재정부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라는 극약처방이 다행스럽게 큰 부작용 없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제도와 용제조건부면세 같은 제도까지 더해져 힘을 발휘한다면 유사석유 걱정 없는 청정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라는 극약처방이 다행스럽게 큰 부작용 없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제도와 용제조건부면세 같은 제도까지 더해져 힘을 발휘한다면 유사석유 걱정 없는 청정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